

● 제27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8.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97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성백진 의원 외 10명
- 나. 제안일 : 2017. 11. 28.
- 다. 회부일 : 2017. 11. 2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범위가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의원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나. 주요내용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범위에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서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범위가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의원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범위(안 제6조제5호 신설)

- 현행 조례 제6조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이동, 편의시설 보장,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의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까지 추가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5. (생략)</p>	<p>제6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각·시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음(제20조, 제21조).
- \* 전자정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며,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뜻함.
- \*\* 비전자정보는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함.
- 이와 같이 관계법령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당한 정보 접근과 편의제공 및 지원 수단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청각 및 시각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적극 부응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범위에 시각·청각 중증장애의원의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각·청각 중증장애 의원을 포함해 장애의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시각·청각 중증장애인의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회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 1****광역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범위**

사도 의회명	조례 상 중증장애의원 지원범위
강원도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북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울산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인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2.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	1.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남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제주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붙임 2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 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